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30일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동욱,
김혜지, 송경택, 이상욱,
이효원, 이희원, 장태용,
채수지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를 제정('19.9.26.)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관리 및 지원하여 왔음
- '22.1.13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(등록·지원에 관한 사항, 실태조사,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 등) 갖게 되었음
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시행일 : 2023. 1. 1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